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5. 12. 18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11월 7일

나. 발의자: 김지연 의원 외 4명

다. 회부일자: 2025년 11월 17일

라. 상정일자: 제266회 제2차 영등포구의회 정례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11. 2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김지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도로 신설·확장·재정비 등 각종 개발사업 단계에서 자전거도로 설치 및 기존 노선과의 체계적 연계방안 반영을 명시하여,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 확보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본 조례 개정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자전거도로 설치 및 기존 자전거도로 연계 방안의 반영을 촉구하고, 도로 파손·훼손 또는 사고 위험 발생 시 신속한 보수 및 개선 조치를 통해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류데레사)

□ 개정 배경 및 취지

-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도시·군계획,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, 택지·공업·관광단지 조성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자전거도로 조성을 포함한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.
- 또한, 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“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”하도록 명시하였으며,
 - 법 제10조에서는 자전거이용시설(자전거도로 포함)은 도로관리청이 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.
-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관리청으로서 구청장이 자전거도로의 파손·훼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보수·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,
 - 도시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자전거도로 조성과 기존 노선과의 연계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,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
□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5조의2(자전거도로의 설치와 운영 등)제4항은 도로의 개설·확장·재정비 또는 주거·상업·공업·관광단지 및 택지개발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, 자전거도로 설치 및 기존 자전거도로와의 연계 방안을 관련 계획을 수립·시행 시 포함하도록 규정함.
- 같은 조 제5항은 자전거도로에 노면 파손, 훼손 또는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이 신속히 보수·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.

□ 검토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도로의 신설·확장·재정비 등 개발사업 단계에서 자전거도로 설치 및 기존 노선과의 연계방안을 반영

하도록 규정함으로써,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자전거도로의 연속성과 통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.

- 아울러, 자전거도로의 파손·훼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발생 시 신속히 보수·개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,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지연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658
--------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5. 11. .
발의자: 김지연 · 차인영 · 전승관
남완현 · 정선희 의원 (5인)

1. 제안이유

도로 신설·확장·재정비 등 각종 개발사업 단계에서 자전거도로 설치 및 기존 노선과의 체계적 연계방안 반영을 명시하여,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 확보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본 조례 개정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자전거도로 설치 및 기존 자전거도로 연계 방안의 반영을 촉구하고, 도로 파손·훼손 또는 사고 위험 발생 시 신속한 보수 및 개선 조치를 통해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구청장은 도로를 개설, 확장, 재정비하거나 주거·상업·공업·관광단지 및 택지 개발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, 자전거도로의 설치 또는 기존 자전거도로와의 연계 방안을 포함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구청장은 자전거도로에 노면 파손, 훼손,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보수·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의2(자전거도로의 설치와 운영 등) ① ~ ③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5조의2(자전거도로의 설치와 운영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④ 구청장은 도로를 개설, 확장, 재정비하거나 주거·상업·공업·관광단지 및 택지 개발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, 자전거도로의 설치 또는 기존 자전거도로와의 연계 방안을 포함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⑤ 구청장은 자전거도로에 노면 파손, 훼손,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보수·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.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